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 특별전형 선발 등〉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11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다자녀 가구의 자녀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	2
2. 다자녀 가구의 자녀 입학전형료의 면제 또는 감면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7.

3. 회부연월일 : 2025. 1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음. 특히, 첫째 비율이 높고 셋째 이상 자녀 비율이 낮아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지적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가계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여 추가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다자녀 가구의 자녀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모든 자녀인 학생을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모든 자녀인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에----- ----- ----- -----

현행	개정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⑧ 시·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	----- ----- ----- ----- ----- -----. ⑥ 제4항에----- ----- ----- ----- -----. ----- ----- ----- ----- ----- -----. ⑦ 제6항에----- -----제4항에-----. ⑧ 제6항에----- -----제4항에----- ----- -----. ⑨ -----제4항에----- ----- -----

현행	개정안
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⑪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⑩ -----제4항-----제9항에----- -----. ⑪ -----제4항에----- -----. ⑫ -----제4항에----- -----. 1. 2. (현행과 같음) ⑬ -----제12항에----- -----.

현행	개정안
⑬ (생략)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에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3. (생략) ② ~ ⑥ (생략) 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 ----- ----- ----- ----- ----- ----- ----- ----- -----. 1. 제34조제4항에----- ----- ----- 2.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10항을-----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4조제14항을-----

현행	개정안
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 4. (생략)	----- ----- --- 2. ~ 4.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령¹⁾에서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으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정하고 있음.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4조의8에서 대학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1)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 특별전형’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전형의 선발대상 및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²⁾,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제1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을 정하고 있음³⁾.

□ 한편, 특별전형의 구분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원 내 특별전형’은 대학의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독자적 기준 및 차등적 보상 기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자격을 정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한 기준’과

2) 「고등교육법」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회균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의5제4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대학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전형 대상 및 제3항의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14호 각 목의 사람

→ 장애인 등 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람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아동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

② 법 제34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4)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p.11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고,

‘정원 외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⁵⁾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정원 외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령⁶⁾에서 정하는 학생정원의 과도한 팽창 등을 막기 위해 그 대상과 규모를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특별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정원 내 특별전형의 경우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대안 학교 출신자 자녀 등 다양한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 전형 외 특별전형의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 12의2.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형 종류 및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음.

[특별전형의 분류⁷⁾]

구분	전형 종류	기회균형특별 전형해당여부 ⁸⁾	운영가능여부	
			정원 내 전형	정원 외 전형 ⁹⁾
대학입학 전형기본 사항에 의한 특별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	○	○	○
	농어촌 학생	○		○
	특성화고교졸업자	○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		
	서해 5도 학생	○		○
	자립지원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 (제3국출생 제외)
	만학도	○		○ (비수도권 대학해당)
	재외국민과 외국인			○
	지역균형			
	지역인재			
	산업대학 우선선발			
	특기자(예체능, 어학 등)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예시)	검정고시 출신자			
	다문화가족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대안학교 출신자			
	종교 관련			
	그 외			

7)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p.12

8)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6제1항

9)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¹⁰⁾]

구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대상자	총학생수 기준 ¹¹⁾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1호	산업체 위탁학생	교육부장관이 결정		교육부장관이 결정	
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2%		10%o	
4호	각종 장애·지체로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6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제한없음		제한없음	
12호의2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제한없음		제한없음	
14호	농어촌지역, 도서벽지 학생	4%	5.5%	11%	10% (의치한5%,교대·원격대20%)
	특성화고교졸업자	1.5%			10% (의치한5%,교대·원격대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20% (의치한5%,교대·원격대20%)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20% (의치한5%,교대·원격대20%)

□ 개정안은 법령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형의 종류 및 모집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정원 외 특별전형’에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10)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p.13

11) 「고등교육법시행령」 [별표 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지원을 강화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정원 외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로써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구의 자녀’의 경우가 기존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과 같이 별도의 입학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임.

또한,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법령에서 모집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구의 자녀’ 대상 특별전형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무화하는 경우 기존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인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입과 관련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의 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현행 제도상 대학의 장은 자율적으로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원 내 특별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바 일부 대학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원 내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²⁾.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시·도 교육청, 대학교협, 대학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2) 다자녀 2인 이상 1개교, 3인 이상 34개교, 4인 이상 2개교 등

[관계기관 의견]

○ 교육부: 신중 검토

- 대입 특별전형(사회통합전형 등)은 차등적 교육 보상이 필요한 학생에게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
- 다자녀가정이라는 환경이 사회통념상 별도의 입학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교육적 결손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대입과 관련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 고려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
-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법령이 규정하는 모집인원의 상한 내에서 대학이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집인원을 설정하고 있음
- 다자녀특별전형을 의무화·강제하는 경우 대학의 여건에 따라 이미 정원 외로 선발중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학 입학과 관련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의 기회를 잠식하는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시도교육청(대구) : 신중 검토

-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대학 입학전형 단계부터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기존 전형 내에서 다자녀 학생 선발의 확대가 아닌 별도의 특별전형 신설은 대입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검토가 필요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신중검토

- 대학 입시에서 특별전형이란 상대적으로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해야하나, 다자녀가정 자녀가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
-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수도권 대학들로 쏠림 현상 발생을 야기할 수 있어 현재 지역 정주 증진을 위한 정책 등과 상충
- 정책의 목표가 교육비 부담 완화에 있다면 입학 전형이 아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사료됨

○ 대학 : 신중 검토

- (한양대ERICA) 법률 개정의 취지는 공감하나, 다자녀 특별전형의 도입은 강제 규정보다는 권고 또는 선택적 도입 권한으로 두어, 각 대학이 교육목표·지역적 특성·지원자 규모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전형료 감면의 경우 대학이 비교적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임

2. 다자녀 가구의 자녀 입학전형료의 면제 또는 감면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② (생략)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③ ----- ----- ----- <u>및 다자녀 가구</u> <u>의 자녀 등</u>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4¹³⁾에서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13)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대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¹⁴⁾.

한편,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는 입학전형료와 관련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하고 사회배려 대상자 등에게는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¹⁵⁾.

-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하고, 그 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대상자, 장애인, 상이등급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대상을 정하고 있음.

참고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4년제 대학 185개교(캠퍼스

1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5)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p.44

포함)16)의 입학전형료 징수대상액은 총 1,594억원으로, 면제·감면 규모는 43억원(12만건)이고, 이 중 대학의 자율적 사유에 따른 면제·감면은 24억원으로 면제·감면 총액의 5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2025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지원 건수	징수대상액 (A)	면제/감액 (B)	수입액 (A-B)	지출액	반환액
계	3,209,837	159,444,706	4,380,542	155,064,163	148,740,263	6,384,244
수시	2,528,366	136,316,974	3,793,323	132,523,651	127,784,889	6,255,088
정시	681,471	23,127,732	587,219	22,540,512	20,955,374	129,156

* 2025학년도 1인당 평균 전형료(산정 기준 : 전형료 수입액 / 지원 건수) 48,309원

[입학전형료 면제 및 감액 현황]

구분	국가보훈대상자(원)	기초생활수급자(원)	대학 자체 지정(원)
2025학년도	201,350,900	1,716,095,300	2,463,096,843
2024학년도	173,461,100	1,526,687,950	2,260,587,139

* 대학 자체 지정 :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다자녀, 다문화 등 대학별 상이
(자료: 교육부)

□ 개정안은 현행법 상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대상에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16) 전체 198개교 중 입학전형료 미징수 대학 13교(광주가톨릭대, 광주대, 광주여자대, 남부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수원가톨릭대, 영산선학대, 중앙승가대, 초당대, 한국침례신학, 한라대, 호남대) 제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입 지원의 기회균형을 위한 제도로 그 대상을
엄격히 선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현행 법령상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대상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장애인·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취약계층
중 전형료 면제·감면 대상이 아닌 집단과의 우선순위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5
